

보도자료

2011년 10월 19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안건]

가. 기획재정담당관 조경식과장(1610) 나.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과장(2770)
다. 인터넷정책과 홍진배과장(2730) 라. 방송진흥기획과 이태희과장(2310)
마.,바. 통신경쟁정책과 이창희과장(2530)

2011년 제57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

- 올 하반기부터 자막고지가 시행될 예정으로 자막고지가 중계 유선 방송에 송출되는 경우 가입가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체 전환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한 디지털 컨버터장치 지원을 위하여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11년말부터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가구에 대한 선별적 타켓 자막고지로 인한 혼란 방지 및 도서·산간지역 시청자의 TV시청권 보호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당초 (A)	변경안 (B)	증감 (B-A)	주요 증액 내용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3,500	3,828	328	영세 중계유선방송사에 디지털컨버터 지원 비용
여유자금 운용	42,569	42,241	△328	사업비 증액분을 여유 자금에서 충당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한 (주)이노션 등 6개 법인에 대한 허가 심사내용을 심의한 결과,
 - 허가적격 판정을 받은 2개 허가신청 법인((주)이노션, (주)케이엘넷)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위치정보사업 허가)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신규 허가하기로 의결함

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1.5.19)됨에 따라, 등록요건, 등록 절차 등 관련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라.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첨부2 참조)

-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 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청권 보장 강화와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 및 간접광고 허용을 통한 외주제작사 육성기반 마련 등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마. 허가조건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4항)과 사업시작의 의무 (법 제15조)를 위반한 (주)담양케이بل방송 등 4개 법인에 대한 행정 처분여부를 심의한 결과,

- (주)담양케이블방송, (주)장성삼계케이블, 구례케이블티비시스템(주), 옥천광케이블네트워크(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에 따라 '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간통신사업(초고속인터넷)을 개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

바.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에 관한 건

- o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음에도 사전에 방통위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있던 중, 폐지 승인을 신청한 (주)연기디지털네트웍(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위반)과,
- o 기간통신사업을 먼저 폐지하고 사후에 폐지승인을 신청한 (주)의령네트워크(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위반)에 대한 사업폐지 승인 및 제재 조치 여부를 심의한 결과,
- (주)연기디지털네트웍과 (주)의령네트워크의 기간통신사업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함

< 첨부 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주요 개정 내용

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등록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29조)

- 등록신청시 정관,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이용자 보호계획서,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제2항 신설)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접수 후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급하도록 함(제6항 신설)
- 법률에서 정한 등록요건(기술적 조치계획, 인력 및 물적 시설, 재무건전성,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세부 내용을 별표로 규정(제8항 신설)

<등록요건 주요내용>

기술적조치	○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저작물등의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저작물 인식기술, 검색 및 송신제한, 경고문구 발송) － 또한, 이용자 정보(ID, 이메일 주소 등) 표시, 2년 이상 로그파일정보 저장 ○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포함) 유통방지 및 표시를 위한 조치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에 따른 지침 중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제48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을 콘텐츠에서 판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인력 및 물적시설	○ 임원급 또는 부사장급 이상으로 저작권 보호·청소년보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및 공표(겸임가능) ○ 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 저작물 유통 등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2인 이상을 배정하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 추가
재무건전성	○ 개인, 법인을 포함하여 자본금 3억원 이상
기타	○ 이용자보호기구 설치, 서비스 약관 제정 등 이용자보호계획 수립

② 권한의 위임규정 (안 제65조제2호의2 신설)

- 웹하드/P2P 사업의 등록 및 등록조건 부과, 변경등록, 폐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③ 기 타

- 초기 등록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는 15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안 부칙 제2조)

□ **향후계획**

- 법제처 심사 : '11년 10월
- 차관·국무회의: '11년 11월

< 첨부 2 >

방송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미비점 개선과 외주제작사 육성기반 마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법적 미비사항 보완
- (경과) 위원회 보고(7.7.), 입법예고(7.13.~8.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9.29.)

□ 주요 개정 내용

① 보편적시청권 관련

- (정의 구체화) 정의에 '추가비용 부담 없이'를 추가하여, 기존 시청수단에 더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규정(제2조)
- (중계 가능 방송사 사전 확인) 중계 가능 사업자의 사전 충족 요건을 정하고 신청한 사업자의 요건을 확인하여 고시(제76조의6, 제108조)
- (금지행위 상향입법·신설) 방송법 시행령의 금지행위(제60조의3)를 타법 선례에 맞춰 상향입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제76조의3)

<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유형 >

< 상향입법 조항 >

-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제1호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신설 조항 >

- 국민 전체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추가비용 부담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사전 확인된 방송사업자를 하나 이상 중계방송권자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간주)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과 연관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는 행위

②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 관련

- (외주제작사 정의 신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로 정의(제2조)
- (간접광고 정의 개정)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광고’를 ‘상품, 서비스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로 개정하여 대상품목 명확화(제73조)
- (간접광고 허용주체 확대) 외주제작사에게 간접광고 영업 허용(제73조)
- (분쟁조정)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에 외주제작사 포함(제35조의3)
- (자료제출)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사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제98조)
- (과징금 부과) 법 제33조의 심의규정 또는 제74조제2항의 협찬고지 규칙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에 외주제작사 포함(제100조)

③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 (결격사유 근거 마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및 방송 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외국인, 미성년자 등) 마련(제13조)
- (허가유효기간 단일화) 허가 유효기간을 전파법령으로 일원화(제16조)

□ 향후계획

- 방송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11.10월)
- 방송법 개정안 차관·국무회의, 국회 제출(‘11.11월)